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246호
- 나.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
- 다. 발의일자 : 2022년 05월 25일
- 라. 회부일자 : 2022년 05월 27일

2. 제안이유

-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할당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정한 사용기준과 예약 투명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일부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이용시민에게 적정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제안된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의 우선 사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제4항)
- 나. 목동 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전용사용료를 조정함

(안 별표 3)

다. 독섬승마훈련원 관련 항목을 삭제함(안 제16조제2항, [별표1], [별표2], [별표3])

라. 시장이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을 위해 노력하고 체육 시설 특정장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함(안 제4조제5항, 안 제15조)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공공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 동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 할당제’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 ·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9.10.)을 근거로 체육시설 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며,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적정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나. 공공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안 제5조의2)

-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제4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시장이 정한다.</u>

-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은 총 7개소로 시립 시설은 서울곰두리체육센터가 유일하며 2021년도 기준으로 시설 이용자의 26.8%만이 장애인임.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민간위탁 현황〉

설립	시설명	자치구	주요시설	운영법인	개관일
시립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송파구	수영장(2),골프장,체육관,프로그램실,체력단련장 등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95.4.20
법인	서부재활체육센터	은평구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체력증진, 프로그램실 등	사(복)엔젤스헤이븐	'02.12.2
	기쁜우리체육센터	강서구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체육관, 프로그램실 등	사(복)기쁜우리월드	'04.12.6
	동천재활체육센터	노원구	빙상장, 헬스장, 재활운동, 에어로빅실 등	사(복)동천학원	'03. 5.1
	SRC재활체육관	경기광주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사(복)에스알씨	'86.12.3
구립	마포푸르메스포츠센터	마포구	수영장, 체육관, 장애인건강증진실, 상상누림터, 프로그램실	재)푸르메	'16. 5.1
	시각장애인축구장	송파구	축구장	송파구장애인체육회	'99.6.25

- 이러한 장애인체육시설의 경우 지역 내 시설(특수학교 포함) 및 재가장애인의 이용을 우선하고 있으며 장애인 이용율이 50% 이상 되도록 권고하고 있음.

〈서울시 장애인체육시설 2021년 이용자 현황〉

(단위 : 명, %)

시설명	총 이용자			장애인			장애인 이용율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1,033,775	451,018	582,757	511,777	247,831	263,946	49.5%	54.9%	40.7%
서울곰두리 체육센터	415,743	189,236	226,507	111,313	69,521	41,792	26.8%	36.7%	18.5%
서부재활체육센터	355,649	142,060	213,589	286,099	114,435	171,664	80.4%	80.6%	80.4%
기쁜우리체육센터	44,767	21,712	23,055	26,236	17,211	9,025	58.6%	79.3%	39.1%
동천재활체육센터	49,217	32,049	17,168	17,026	12,438	4,588	34.6%	38.8%	26.7%
SRC재활체육관	122,409	44,428	77,981	50,144	20,915	29,229	41%	47.1%	37.5%
마포푸르메 스포츠센터	41,582	17,671	23,911	17,707	10,401	7,306	42.6%	58.9%	30.6%
송파시각장애인축 구장	4,408	3,862	546	3,252	2,910	342	73.8%	75.3%	62.6%

- 일반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장애인 이용율 데이터조차 없고 서울시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이 4.1%(2022년 2월말 기준)이나 장애인 편의 시설의 부재 등으로 시설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2년 2월 말 기준 및 장애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기타
인원	391,378	167,240	40,079	41,113	59,943	27,384	55,619
비중	100	42.7	10.2	10.5	15.3	7.0	14.0

※ '22년 2월 말 주민등록인구 : 9,732천 명(내국인 9,508천 명, 외국인 224천 명)
출처: 행정안전부 국가통계포털

- 최근에는 비장애인 시설과 장애인 시설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기존 시립체육시설 이용을 장애인이 일정비율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다만 실제 장애인의 이용 니즈(needs)가 높은 곳은 자치구 생활체육 센터인 바, 자치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자치구 조례에도 장애인 할당제를 명문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임.

다. 공공 체육시설 관리·감독 강화(안 제4조제5항 · 안 제15조)

-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제5항에서 “시장이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안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에서 “체육시설 특정 장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 하도록 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생략)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 ----- ----- -----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

- 이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의견 등에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활 속 반칙 · 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9.10.)을

근거로 제안되었음.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 체육시설 내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가 저해되고 시설 이용이 불편하다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의견 등〉

- 연중 가리지 않고 매일 음주를 하는데 심지어 오전 9시부터 술판이 벌어지는데 이는 명명백백한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 위반임. ('18. 10월, 국민신문고)
- 시설 이용시 이용수칙에 대해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음. 가끔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취식을 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음. ('19. 7월, 국민생각함)
- '19. 6. 11:00경 ○○시 ▽▽테니스장에서 회원들이 단체로 음주와 흡연을 하고 있는 현장 확인. ('19. 6월, 권익위원회 실태조사)

- 또한 체육시설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승인없이 무분별하게 특정단체의 입간판·벽보·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사설체육시설로 오인하여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불만민원이 발생함.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의견 등〉

- 중앙공원 테니스장 입구에 ◇◇테니스클럽 입간판이 걸려 있는데 군민의 공동이용 시설물에 개인클럽의 입간판을 설치한 사유를 공개하고 철거할 필요가 있음. ('19. 3월, 국민신문고)
-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족구장, 프리테니스장 등 9곳이 특정 동호회들에 의해 독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일부 동호회는 체육시설 앞에 동호회 이름이 적힌 간판을 내걸어두기도 함. ('19. 1월, 언론)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로 특정단체(동호회 등)가 공공체육시설을 독점하거나 시설 내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보임.

라. 공공 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안 제5조제4항·안 제5조의2)

- 공공 체육시설에 특정 동호인단체의 독점사용을 예방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차별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간(사용일·시간)에 관한 적용기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안 제5조(사용허가)제4항을 신설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허가) ① ~ ③ (생략) <u>〈신설〉</u>	제5조(사용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u>

- 안 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신설하여 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용허가 우선순위를 규정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u>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u> <u>1.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최·</u>

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 현재 시립체육시설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관심사를 진행하였고 세수입 증대를 위해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의 대관이 우선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음.
-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순위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지만 공익성과 체육시설 본연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시설활용 기준을 확립해야 할 것임.

마. 공공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제고(안 제5조제5항)

- 안 제5조(사용허가)제5항에서 체육시설의 예약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 공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 서울시는 현재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https://yeyak.seoul.go.kr>) 홈페이지를 통해 체육시설 예약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 시 예약단체명, 예약자명이 공개되지 않아 특정단체(인)에게 장기간 사용 특혜가 부여되는 것은 아닌지 민원이 발생하였음.
- 사용자가 신청 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안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사전에 받은 후 공개하고, 동의 거부 시 시설이용 예약이 제한될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서울시설공단 돛경기장운영처(돛구장 축구장)의 경우 무단양도 및 불법예약(매크로 사용, 예약접속 IP)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불법 행위 적발 시 축구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예약현황 공개를 통해 체육시설의 예약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체육시설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료 규정 현실화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의 잔디 교체로 인한 이용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사용료) 제1항 관련 <별표3>).

< [별표 3] 전용 사용료 개정안 >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설			현행			개정안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월드컵 경기장	보 조 경기장	1일	-	-	-	<u>232,000~</u> <u>301,600</u>	<u>350,000~</u> <u>455,000</u>	<u>560,000~</u> <u>728,000</u>
		2시간	197,000~ 256,100	295,000~ 383,500	472,000~ 613,600	<u>93,000~</u> <u>120,900</u>	<u>140,000~</u> <u>182,000</u>	<u>224,000~</u> <u>291,200</u>
목 동 운동장	주 경기장	1일	125,000~ 162,500	188,000~ 244,400	302,000~ 392,600	<u>170,000~</u> <u>221,000</u>	<u>256,000~</u> <u>332,800</u>	<u>409,000~</u> <u>531,700</u>
		2시간	50,000~ 65,000	75,000~ 97,500		<u>68,000~</u> <u>88,400</u>	<u>102,000~</u> <u>132,600</u>	<u>163,000~</u> <u>211,900</u>

-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을 천연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구장으로 교체하고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구장으로 변경하는 것임.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의 잔디 교체는 프로구단인 서울이랜드FC에서 목동 주경기장을 대체구장으로 활용(홈경기장인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공사(2022.9.~2026.2.))하기 위해 기존 인조잔디를 프로수준에 맞게 천연잔디로 교체(2021.9.~12.)함.
- 기존 목동 주경기장에서 실시하던 아마축구 경기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으로 이전 개최하기 위해 기존 천연잔디를 인조잔디로 교체(2021.1.~10.)하는 것임.
- 잔디 교체로 인해 조성비와 관리비의 변동이 있어 시립체육시설 관람료 사용료 원가 조사용역(2021.10.) 감정평가 결과를 근거로 전용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임.

< 조성 및 유지비 증감>

<단위:백만원>

구분	천연잔디	인조잔디	증감 (천연→인조)	증감 (인조→천연)
조성비	1,205	800	0.66	1.51
관리비	160	10	0.06	16

- 모든 경기장에 천연잔디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리 운영비 등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프로축구 경기는 천연잔디를 사용하고 아마 축구 경기는 인조잔디를 사용하고 있음.
- 비록 아마축구구단에서 보조경기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유지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멀쩡한 천연잔디 구장을 사장시키고 인조잔디 구장으로 교체하는 것은 매몰비용은 간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위탁운영 시설의 현행화

- 안 제16조(운영의 위탁)제2항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열거하고 있음. 그중 제4호 독섬승마훈련원은 현재 폐쇄된 상태로 향후 재개장될 가능성이 전무한 바,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운영의 위탁)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 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독섬승마훈련원	제16조(운영의 위탁) ----- -----. 〈삭 제〉

- 또한 안 제2조(설치) 관련 <별표1>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서 독섬승마훈련원 란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1항(사용료) 관련 <별표2>에서 1. 개인연습사용료와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및 <별표3> 전용사용료에서 독섬승마장, 독섬승마훈련원 란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제2조 관련)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뚝섬승마훈련원	승마훈련원	승마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8-15(성수동1가 685-6)

[별표 2]

개인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설		금액	
승마장	뚝섬승마훈련원	성인·청소년	40,000~80,000(1시간)
		어린이	25,000~50,000(")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라. 뚝섬승마훈련원 (단위 : 원)

이용자	수강료	비고
성인·청소년 및 어린이	300,000 ~390,000	1. 1일 1시간, 1개월 기준 2. 수강료 외에 별도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입장료는 별표 2의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를 적용한다.

[별표 3]

전용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일반행사	기타 사용
뚝섬승마훈련원	120,000~156,000	180,000~234,000	288,000~374,400	

- 뚝섬승마장은 악취 등 민원문제로 2014년 12월 폐쇄되었고 대체부지 마련 등을 위해 노력 중인 바, 더 이상 활용 가능성이 없는 뚝섬승마훈련원을 조례상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아.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 조정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은 총 면적이 2면(1면 38m×17.9m)으로 중간 펜스와 같은 구분 시설은 없으나 1면만을 대관하여 풋살경기장으로 사용하거나 2면을 대관하여 연식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원가 산정 용역(2020.5.) 결과를 근거로 1면, 2시간 기준의 전용 사용료를 인상(3만원 ~ 3만9천원→ 8만 9천원 ~ 11만 5천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¹⁾함.
 - 그러나 원가 산정 용역 결과는 2면의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나 1면에 대한 원가인 것으로 오인하여 사용료가 과다인상된 상태이며, 다목적구장 풋살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2면을 이용하는 연식야구, 타볼경기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2시간 기준 8만 9천원(최소)을 유지하고 1면을 이용하는 풋살경기의 사용료는 2시간 기준 현행 8만 9천원(최소)에서 4만 4천원(최소)으로 수정 의견을 드림.

< [별표 3] 전용 사용료 수정의견 >

현 행				수정의견			
(평일, 주간, 단위 : 원)				(평일, 주간, 단위 : 원)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 ·일반행사	시	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공·문화예술 ·일반행사
목동 운동장	다목적구장	89,000~115,700(1면, 2시간)		목동 운동장	다목적구장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비고	9.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52,000원으로 한다.			비고	<삭 제>		

1) 의안번호 1738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의 2020년 8월 제출, 2020년 12월 상임위원회 상정되었고, 조례 개정 이후 전용사용료 관련 시행규칙 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례를 둠.

5. 종합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권리를 보장하고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체육시설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사용료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시립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예약의 투명성 확보,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월드컵보조경기장을 아마축구단이 사용하여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것은 한국축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천연잔디 구장에서 연습해야 하는 형편을 고려할 때 인조잔디로의 교체가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한편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의 경우 전용사용료의 과다인상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요금을 감면시키는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집행부 검토의견

**의안번호
3246**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소영 의원	2022. 05. 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 내 요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우선 사용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안 제4조제4항) ○ 목동 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 조정(안 별표3) ○ 뚝섬승마훈련원 관련 항목 삭제(안 제16조제2항, [별표1]~[별표3]) ○ 시장의 체육시설 이용실태에 관한 정기점검 노력 의무 부과, 체육시설 특정장소에 홍보물 등의 설치를 금지(안 제4조제5항, 안 제15조) ○ 공공체육시설 사용기간 등에 관한 공정한 기준 마련 근거 규정,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예약현황 공개 조항 신설(안 제5조제4항~제5항, 안 제5조의2) 				
추 경 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 05. 25. 김소영 의원 발의 ※ (찬성) 김소양, 김춘례, 김태호, 김화숙, 노승재, 박기재, 오한아, 유용, 이승미, 이종환, 이호대, 최영주, 황규복(13명) 				
부 검 의 의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 점 사 항 (의회 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조례안은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애인이 시립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권리를 보장하고 ○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이용실태 정기 점검, 예약 관련 사용기준 근거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동의함 				
대 방 응 안	○ 해당없음				
상 처 결 과					
향 계 후 획					
담 부 당 서	체육정책과	팀장	홍성수(☎2133-2677)	담 당	이신영(☎2133-2682)